개인정보 영향평가서 요약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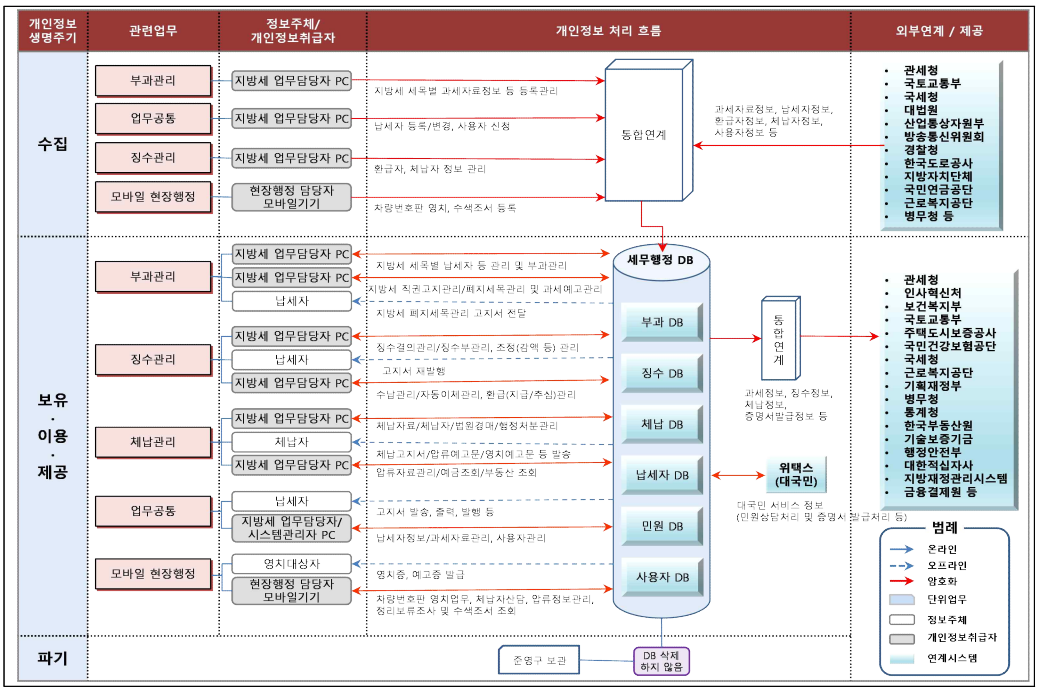
공공기관 명	익산시				
평가기관	㈜씨에이에스	평가 기간	2026.05.04 ~ 2026.05.29	평가 예산	□ 1천만원 미만 □ 1천만원 이상 ~ 3천만원 미만 □ 3천만원 이상 ~ 5천만원 미만 □ 5천만원 이상 ~ 1억원 미만 ☑ 1억원 이상

평가대상시스템 개요					
	시스템명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		시스템 구축 또는 변경 일정	2026. 1. ~ 2026. 12
	추진개요 및 목적	• 지방자치단체의 안정적인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지방세 부과.징수.체납관리 등 세무 업무 처리 지원 • 지방세 관계법 개정 등 외부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사용자 중심의 편의 기능 제공 • 지방세정보시스템의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한 지속적인 성능 향상 필요			
	추진성격	대상여부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35조 제1호 5만 명 이상 민감정보·고유식별정보 처리	추진예산	102,650,562천원 (VAT 별도)
		추진주체	행정안전부		
		추진근거	지방세기본법 제135조(지방세 업무의 정보화)	추진유형	□ 신규 구축 □ 변경(고도화) ☑ 운영
		신기술 유형			
	주요내용	• 지방세정보시스템 안정적 운영 및 유지관리 • 지방세 관련 법·제도 개정 등 외부환경 적기 반영 • 사용자 편의성 증대를 위한 의견수렴 및 기술지원			
	운용체계 변경내용	해당하지 않음			

개인정보파일개요	파일명	정보주체 수	개인정보 항목	제3자 제공	개인정보 처리 목적
	담배소비세관리	102	이름, 집주소, 핸드폰(연락처), 주민등록번호	행정안전부(대국민), 관세청(유니패스)	담배소비세부과를 위한 납세자 정보관리
	등록면허세관리	675,048	이름, 집주소, 핸드폰(연락처), 주민등록번호	없음	등록면허세 과세를 위한 부과관리
	세무조사관리	212	세무정보, 법인정보	우정사업본부	세무조사 관리
	자동차세관리	312,062	이름, 핸드폰(연락처), E-Mail,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장애정보	없음	자동차세부과관리
	재산세관리	570,600	이름, 집주소, 핸드폰(연락처), 주민등록번호, 자산정보	국토교통부, 보건복지부, 주택도시보증공사, 관세청,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국세청,	재산세 과세대상(토지.건물대장)

				근로복지공단, 기획재정부, 병무청, 통계청, 한국부동산원, 기술보증기금, 행정안전부	
	주민세관리	541,880	이름, 집주소, 핸드폰(연락처), 주민등록번호	대한적십자사	주민세 과세자료 관리
	주행세	1	집주소, 핸드폰(연락처), 주민등록번호	없음	주행세 부과
	지방세감액관리	155,699	과세정보	없음	지방세 세목별 감액관리
	지방세결의관리	527,505	과세정보	없음	지방세 세목별 징수결의 관리
	지방세고지서관리	410,588	과세정보	지자체(새올행정), 행정안전부(정부24/대국민)	지방세고지서 발송정보 관리
	지방세납세자 관리	1,844,940	주민등록번호, 휴대폰, 성명, 전화번호, 주소, 생년월일, 금융정보	지자체(새올행정), 행정안전부(정부24/대국민)	납세자 신상정보 관리
	지방세반송관리	52,740	과세정보	지자체(새올행정), 행정안전부(정부24/대국민)	지방세고지서 반송정보 관리
	지방세자동이체관리	8,170	이름,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금융결제원	자동이체 신청 및 해지
	지방세전자수납관리	159,168	이름, 집주소, 핸드폰(연락처), E-Mail, 주민등록번호	금융결제원	전자수납 내역관리
	지방세직권고지관리	95,691	과세정보	없음	지방세 직권고지 관리
	지방소득세관리	138,522	집주소, 주민등록번호, 자산정보, 사업자등록번호	국세청	지방소득세부과관리
	지역자원시설세	598	이름, 핸드폰(연락처), 직장주소, 주민등록번호	없음	지역자원시설세 과세자료 관리
	취득세 관리	544,248	이름, 집주소, 핸드폰(연락처), E-Mail, 주민등록번호	국토교통부, 관세청,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기술보증기금, 농림축산식품부, 주택도시보증공사	취득세 부과자료 관리
	법원경매	9,828	이름, 생년월일,	한국자산관리공사,	법원경매

			집주소, 핸드폰(연락처), 주민등록번호, 자산정보, 납세정보, 행정처분정보	법무부, 한국신용정보원	
	지방세 체납자관리	20,868	이름, 집주소, 주민등록번호	행정안전부(새올행정시스템/e-하나로민원/e호조), 법무부, 국토부, 금융정보분석원, 국세청, 관세청	지방세 체납액 징수 및 관리
	지방세결손관리	56,614	이름,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납세번호	한국자산관리공사, 법무부, 한국신용정보원	지방세 결손관련 자료관리
	지방세공매관리	3,283	이름, 생년월일, 집주소, 주민등록번호	한국자산관리공사, 법무부, 한국신용정보원	체납자 재산 공매를 위한 대상자관리
	지방세과오납관리	204,255	이름, 생년월일, 집주소, 핸드폰(연락처), 주민등록번호	지방재정관리시스템(e호조), 시금고은행	과오납 반환 대상자의 신상정보관리
	지방세수납관리	531,631	이름, 집주소, 주민등록번호	금융결제원	지방세수납관리
	지방세압류대장	94,340	이름, 생년월일, 집주소, 핸드폰(연락처), 주민등록번호	대법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세청, 국토교통부, 관세청, 금융결제원, 여신금융협회(매출채권시스템)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체납처분
	지방세자동차영치관리	6,371	이름, 집주소, 주민등록번호	없음	자동차영치를 위한 납세자 정보관리
	지방세제증명관리	181,179	이름, 집주소, 주민등록번호	서민금융진흥원, 지자체(새올행정), 행정안전부(정부24/대국민)	지방세 관련 제증명 발급
	지방세징수유예관리	8,369	이름, 집주소, 주민등록번호	지자체(새올행정), 행정안전부(정부24/대국민)	징수유예관리
	행정제재관허사업관리	346	이름, 집주소, 주민등록번호	한국자산관리공사, 법무부, 한국신용정보원	납세자에 대한 정확한 부과 및 징수
개인정보 처리 흐름분석	1. 개인정보 처리 흐름 - 차세대 표준지방세시스템은 국토교통부, 국세청, 관세청, 국민건강보험공단, 행정				

		안전부 등과 통합연계시스템을 통해서 과세자료정보, 납세자정보, 환급자정보, 체납자정보, 사용자정보 등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보유 및 이용함. - 익산시 지방세 업무담당자는 지방세에 대한 부과/징수/체납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DB에 안전하게 저장 및 관리 - 차세대 지방세 관련 개인정보의 보존기간이 모두 준영구이므로 DB에서 삭제하지 않음 2. 총괄 개인정보 흐름도 
영향평가기준	평가기준 변경사항 및 사유	- 개인정보 침해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제2025-7호, 2025.9.5.,일부개정) 제10조(평가영역 및 평가분야), 제11조(평가항목)에 의거한 평가항목을 기준으로 법령 개정 및 대상 시스템의 특성에 따른 평가항목을 가감하여 평가 항목으로 구성함 -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은 국가표준보급시스템으로, 행정안전부에서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수행한('22.3) 평가항목은 본 평가대상에서 제외함. 단, 행정안전부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 개인정보 영향평가 평가지표" 에서 제시한 "자치단체 점검내용"을 포함하여 평가함. . 개인정보 처리단계별 보호조치(3장)의 8개 항목 제외 . 대상시스템의 기술적 보호조치(4장)의 15개 항목 제외 - 특정 IT 기술 활용 시 개인정보보호(5장)은 평가 대상시스템과 해당 사항이 없어 본 평가대상에서 제외함(7개 평가분야 37개 항목)
	주요 평가기준	- 2025년 10월 2일에 시행된 "개인정보 보호법령"을 반영 - 2025년 10월 31일에 시행된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을 반영 -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안내서(2025년 10월 개정) 준용 - 본 평가기관 영향평가 수행방법론 및 대상시스템 특성에 따른 평가지표 가감
평가기준에 따른 개인정보 침해요인 분석·평가		**1.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령 준수 여부에 대한 분석평가** - 대상시스템의 개인정보 파일은『지방세법』제49조, 제130조,『지방세기본법』제135조,『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95조에 근거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고,『개인정보보호법』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제1항제2호에 근거하여 적법하게 관련 기관에 제공하고 있음

<table>
<tr><td colspan="2"></td><td><u>2. 개인정보 처리,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운영관리 및 기술적 조치 사항에 따른 분석평가</u>
- 차세대 표준지방세시스템의 개인정보 보유기간은 지방세기본법 등 법령 기준 및 보유 목적에 부합된 기간(준영구)으로 산정하여 보유하고 있음
- 개인정보 유출사고에 대비한 대응절차를 수립하여 훈련을 실시하지 않으면 법규위반 발생 및 유출사고 발생 시 효과적인 대응을 할 수 없어 피해 확산 및 기관의 신뢰도가 저하될 수 있음(1.3.2)
- 개인정보 열람, 정정, 및 삭제 처리 절차를 수립하지 않을 경우, 법규위반 발생 및 정보주체의 열람, 정정, 및 삭제 처리요구를 적절히 처리할 수 없어 정보주체의 권익을 침해할 수 있음(1.4.1)
-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법률에서 규정한 내용이 반영되지 않을 경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필수적 기재사항 누락에 따른 법규위반 발생 및 정보주체의 권리행사가 제한될 수 있음(2.3.2)
-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처리할 수 있는 개인정보의 항목과 그 처리의 법적 근거를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처리하는 개인정보와 구분하여 공개하지 않을 경우 정보주체의 오인을 유발하거나 알 권리를 침해하게 될 우려가 있음(3.1.9)
- 위탁하여 처리하는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공개하지 않을 경우 개인정보 위탁 관리에 관한 내부기준이 없어 위탁된 개인정보가 남용될 위험이 있으며, 정보주체가 위탁되는 항목, 목적 등을 알 수 없게 되어 처리 정지 등의 권리행사를 제한할 수 있음(3.4.1)
- 접근권한 검토 미수행으로 과도하거나 불필요한 권한이 유지되어 정보유출 및 비인가 접근 위험이 발생할 수 있음(4.1.10)</td></tr>
<tr><td rowspan="2">위험요인에대한개선조치</td><td>주요 위험요소에 따른 개선조치 방안</td><td>- 개인정보 유출사고 모의훈련 실시(1.3.2) : 개인정보 유출사고 모의훈련 실시
- 내부관리계획 보완(1.4.1) : 정보주체 권리보장 절차를 포함하도록 내부 관리계획 보완
- 개인정보 제3자 제공사항 공개(2.3.2) :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을『개인정보 처리방침』에 공개
- 개인정보 처리항목 구분 공개(3.1.9)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과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을 구분하여 기재
- 개인정보 처리업무 위탁사실 공개(3.4.1) : 개인정보 처리업무 위탁사실을『개인정보 처리방침』에 공개
- 주기적 접근권한 검토 실시(4.1.10) : 접근 권한 부여, 변경 또는 말소 내역 등을 반기별 1회 이상 점검</td></tr>
<tr><td>위험요소에 따른 정보주체 인지사항</td><td>-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을『개인정보 처리방침』에 공개 확인
- 법적 근거로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과 동의를 받아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을 구분하여『개인정보 처리방침』에 공개 확인
- 개인정보 처리업무 위탁사실을『개인정보 처리방침』에 공개 확인</td></tr>
<tr><td colspan="2">평가결과</td><td>• 대상기관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1장)는 10개 평가항목 중 해당없음으로 평가된 1개 항목을 제외하고 7개의 항목을 이행하고 있으며, 2개 항목에 대해 부분이행하고 있음
• 대상시스템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2장)는 7개 평가항목 중 해당없음으로 평가된 1개 항목을 제외하고 5개의 항목을 이행하고 있으며, 1개 항목에 대해 부분이행하고 있음.</td></tr>
</table>

	• 개인정보 처리단계별 보호조치(3장)는 17개 평가항목 중 해당없음으로 평가된 2개 항목을 제외하고 13개 항목을 이행하고 있으며, 1개 항목에 대해 부분이행, 1개 항목에 대해 미이행하고 있음. • 대상시스템의 기술적 보호조치(4장)는 27개 평가항목 중 해당없음으로 평가된 7개 항목을 제외하고 19개의 항목을 이행하고 있으며, 1개 항목에 대해 미이행하고 있음. • 추가적으로 요즘 해킹 등으로 인해 개인정보 유·노출 사고가 빈번함으로 시스템 접근권한 점검활동을 강화하여야 하며, 업무 수행 시 개인정보 유·노출 사고에 유의할 것을 권고함.